

I.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01 개요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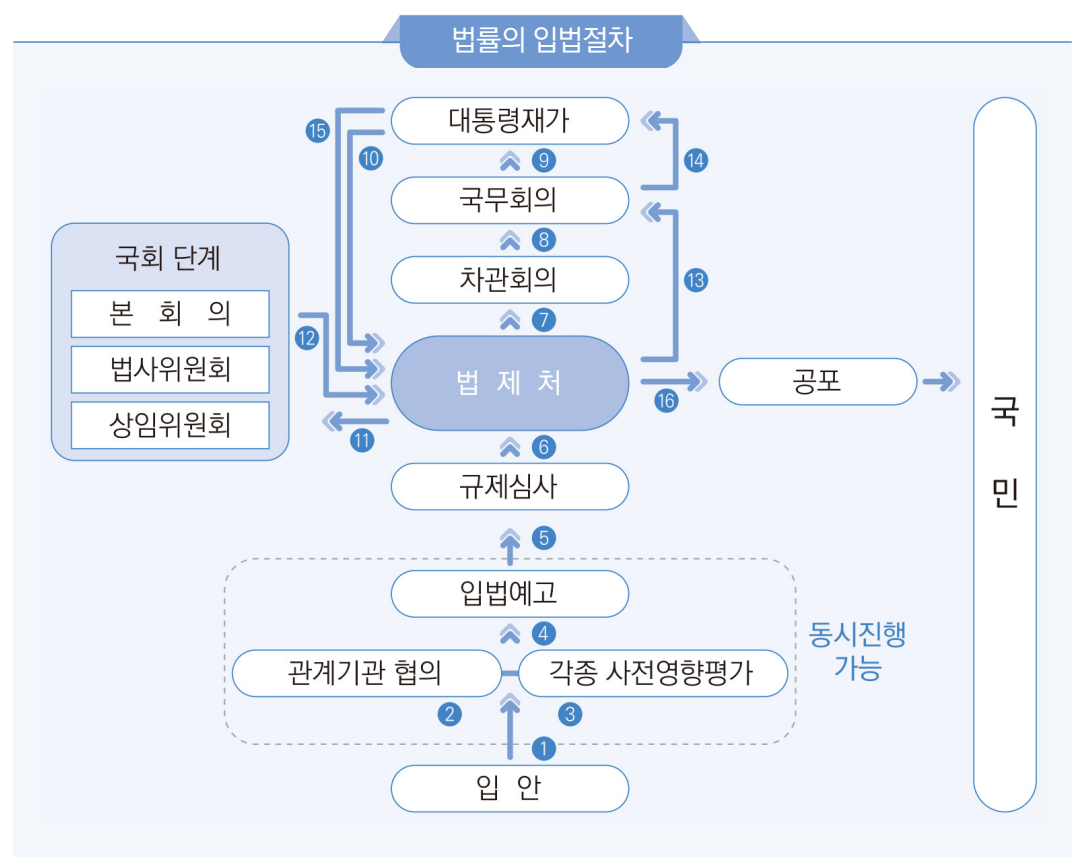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02 법률의 입법절차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2조).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법률 중에는 정부가 제출한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도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정부제출 법률안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부른다. 여기서 우리의 1차적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구체적인 입법절차일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및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V. 법률안의 국회심의(p.99 이하) 부분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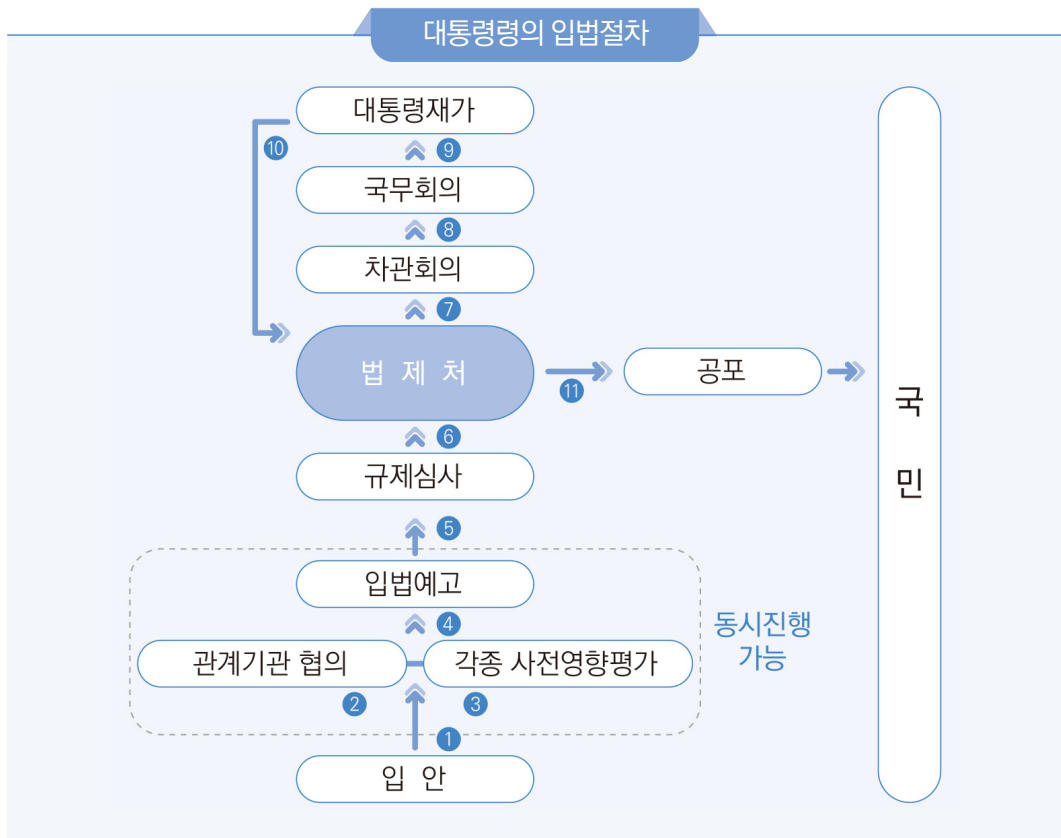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률안을 입안하게 된다(①). 입안된 법률안은 그 시행 과정에서 타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또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 각종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평가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률안을 확정하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④).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심사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으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다(⑥).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차관회의(⑦) 및 국무회의(⑧)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⑨)를 마치면 국회에 제출(⑩·⑪)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⑫)되면 법제처는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⑬)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⑭)된 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⑮)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⑯)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03 대통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서 그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하게 되며, 법률과 같이 국회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



04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법령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절차를 마치게 된다. 다만, 총리령의 경우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총리령을 총괄하는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해야 한다. 부령의 경우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각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

